

**법정 내 피고인의 사진·일러스트 게재 시  
수인한도(受忍限度) 넘으면 초상권 침해**

-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의 독물카레사건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상고중인 林眞須美 피고가 법정 내에서의 사진과 일러스트가 사진주간지 「포커스」(휴간)에 게재되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출판원인 新潮社를 상대로 2,2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공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2005년 11월 10일 문제가 된 사진 1점과 일러스트 3점 중 사진·일러스트 각각 1점에 대해 “피촬영자의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위법으로 판결, 법정 내 초상권 침해의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한편 2심 판결 중 일러스트 3점 모두를 위법으로 판시, 220만 엔의 배상을 명한 부분은 파기하여 오사카 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초상권침해에 대해 “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내용, 촬영장소나 목적, 양태(樣態),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갑이나 포승을 한 모습에 대해서는 “몰래 촬영하는 양태는 온당하지 않으며, 촬영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에 대해서도 “피고를 모욕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林 피고가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있는 일러스트와 손짓을 하면서 대화하는 일

러스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정 내의 피고인의 동정을 보도하기 위해 용모 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커스」는 1999년 5월 26일호에 법원의 허락없이 촬영한 林 피고의 사진을, 8월 25일호에는 법정 내에서의 용모 등을 그린 3점의 일러스트를 각각 게재했다.

(『신문협회보 2005년 11월 15일자] □

**미국 AP통신사, 기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뉴스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성명」 발표**

AP 통신사는 2005년 11월 30일, 기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Statement of News Value and Principles (뉴스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익명정보원의 취급방법을 위시하여 기자의 행동에 관한 매뉴얼 류의 정보를 모아 동사의 윤리기준을 전달하는 새로운 서문과 함께, 멀티미디어용 전송사업의 전개를 반영하여 기사, 사진, 영상, 음성, 그래픽스 등에 관해 편집·가공의 기준, 크레딧의 인용방법, 프라이버시의 배려 등 주의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성명 중 「기사」의 취급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익명정보원에 관한 기준 및 관행

○ 가능한 한 정보는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로 한다. 만일 정보원이 백 그라운드(back ground) 또는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취급

을 주장하면, AP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의 취급에 관한 기본원칙은

① on the record = 정보는 특별한 양해없이 이용하여 정보원의 이름을 인용한다.

② off the record = 정보는 공표할 수 없다.

③ back ground = 정보는 공표할 수 있으나 정보원과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 (이름은 숨기되 그 입장은 묘사 가능 등. 정보원이 복수의 기자에게 백 그라운드 브리핑(back ground briefing)을 할 경우 AP의 기자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로 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④ deep back ground = 정보는 공표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밝히지 못한다.

○ 또한 익명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한다.

① 그 정보가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고, 기사에 불가결할 경우

② 익명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경우

③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

○ 익명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소재를 사용하려는 기자는, 기사를 데스크에 보내기 전에 보도부장(News Manager)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보도부장은 소재를 자세히 조사하여 AP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확인할 책임과 함께 기자와 마찬가지로 정보원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재가 정밀히 조사되고 확인되어야만 보도부장은 그 소재를 전송할 수가 있다.

○ 기자는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의 전체

아래 인터뷰를 하도록 한다. 정보원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취재에 앞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터뷰를 끝낸 후 기자는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 되도록 시도한다.

○ 기자는 익명 사용에 동의하기 전에, 정보원에게 어떻게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지를 물어 정보원이 직접 정보를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 정보원이 추가적인 코멘트나 정보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제의하더라도 이를 동의해서는 안 된다.

○ 복수의 정보원을 갖도록 항상 노력한다. 다른 정보원에게 확인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사는 보류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정보원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재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다.

○ 기사에서는 정보원이 익명을 희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가 문서에 의존하는 경우, 기자는 그것을 입수한 경위를 가능한 한 기술한다.

○ 기사에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뒷받침 할 정보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소식통」으로는 불충분하며 「백악관 보좌관 소식통」, 「영국 외무부 고위 관리」 등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한다. 기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원의 묘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 명백하거나 잘 알려져 있는 정보를,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정보는 「사실」로 명기해야 한다.

○ 익명정보원을 사용한 기사에는, 기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한 기자 이외의 기자가 그 기사에 익명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

자의 이름도 협력자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익명정보원을 사용한 기사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관해 회사 내외로부터 들어온 의견은 즉각 보도부장에게 전달한다. 익명정보원에 근거한 타사 기사나 뉴스릴리스를 보도할 경우에도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은 적용된다.

### ▲ 서명(署名)

○ 기사의 서명은 집필자가 정보내용을 취재한 장소에 체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기자가 기사를 집필한 경우는 편집자가 집필자의 서명으로 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서명으로 한다.

○ 복수의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경우 서명은 편집자가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심적인 사실을 보도한 기자의 서명으로 하며, 연재의 경우 회수마다 서명을 바꾼다.

○ 정보수집이나 기사 집필에 복수의 기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서명 혹은 '편집자주'를 사용한다. 서명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공헌을 한 기자의 이름을 명기할 수도 있다. 2명의 서명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의 한 기자가 취재장소에 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다.

### ▲ 발신지(datelines)

○ 발신지는, 기사와 관련한 기본적 정보를 입수한 장소를 독자에게 전한다. 서명이 있는 기사는 발신지에 있었음을 뜻한다. 발신지가 붙은 기사에 다른 장소에서 입수한 추가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한다.

### ▲ 프라이버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폭행의 피해자

와 범죄로 고소되었거나 범죄를 목격하거나 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신원은 통상 밝히지 않는다. 또한 이들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전송하지 않는다.

### ▲ 인용(引用)

○ 정확하게 인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듯, 인용이 문맥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법이나 언어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을 개변(改變)하지 않는다.

(『신문협회보』 2006년 1월 24일자) □

## 수혈 실수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보도는 불법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

수혈실수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의료법인 「기상회(氣象會)」(오사카시)가 마이니찌 신문사를 상대로 2,0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2005년 12월 16일 “수혈실수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는 기사를 집필·게재한 점에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 언론사 측에 100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0년 4월 24일자 석간에 『점적(点滴)·수혈, 연속실수』, 『나라(奈良)의 병원 1년 후에 환자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기사로, 기상회가 경영하는 나라 현(縣)내의 병원에서 1998년 12월 여성이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

받아 혈뇨(血尿)가 나왔고, 1년 후에 사망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가 지적한 수혈실수와 여성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성을 인정하고, 수혈양이나 혈뇨의 유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기사는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사에는 수혈실수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한 직접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사구성이 수혈실수와 본래 관계가 없는 사망 사실과를 명확하게 구별함이 없이 막연하게 사실 경과를 기재하고 있는 것이나, 제목의 내용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수혈실수에 의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월 24일자) □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반영한 보도이므로  
윤리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영국 PCC -

PCC는 블레어 영국 총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조언자인 캐롤 채플린 씨가 the News of the World지(이하 NoW)를 상대로 낸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채플린 씨는 NoW가 지난 2005년 6월 26일자 1면과 2면에 『채플린, 제정신이 아니다』, 『쉐리, 이제는 채플린을 떠나야 할 때』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PCC에 불만신청을 냈다.

채플린 씨는 NoW의 기자들이 몰래카메라와 녹

음장치를 사용하는 등 PCC 윤리강령 제10조를 위반했으며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PCC 윤리강령 제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플린 씨는 NoW가 런던호텔과 체육관에서 찍은 사진들을 포함해 그녀와 그녀 가족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PCC 윤리강령 제3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은 NoW의 조사 편집장인 매절 마무드 씨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는데, 기자들은 가명을 사용해 채플린 씨의 헬스 피트니스 회사 고객으로 가장해 접근했다. 기사 안에는 채플린 씨와의 개인적인 대화내용도 포함됐는데 그 중에는 블레어 총리가 운동이 더 필요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내용도 있었다.

채플린 씨의 주장에 대해 NoW 측은 채플린 씨와 블레어 총리 가족 간의 ‘대단한 관계’가 대중들의 ‘압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NoW 측은 채플린 씨가 오히려 블레어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선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PCC는 NoW가 블레어 총리와 매우 가까운 관계의 라이프스타일 조언자를 취재한 것은 대중의 관심사를 따르는 것이었으며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PCC는 NoW가 채플린 씨의 사적인 집안일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을 다루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며 사진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에서 찍힌 것은 맞으나 채플린 씨의 직업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채플린 씨가 주장한 기자들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NoW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Press Gazette 2005년 12월 16일자) □